##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591

발의연월일: 2022. 9. 28.

발 의 자:기동민·권칠승·김두관

김의겸 • 도종환 • 신정훈

위성곤 • 이수진 • 이정문

임호선 · 조응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편의성이 높 아졌고, 이에 따라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2천949건, 2017년 8천737건, 2018년 1만 1천595건, 2019년 2만778건, 2020년 2만 3천36건 등 1인당 부당소송이 연간 2만건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와 같은 부당소송인들이 인지 및 송달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 시 소송구조 신청을 남용하는 행태는 부당소송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지목되고 있음.

인지 미납의 경우, 인지제도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특정 개인을 위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성공가능성 이 없는 소송 및 법원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수십 건, 수백 건의 무차별적인 다수의 부당소송의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일정 금액조차 미납된 경우 서류 접수 보류 사유로 삼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지 미납으로 인한 접수 보류가 부당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백 건이 넘는 부당소송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소권 남용의 폐해를 막고 재판청구 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장,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 3조에 따른 참가신청서, 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 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
우의 효력) (생 략)	우의 효력)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장,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참가신청
	서, 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
	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1천원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
	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u>만원</u>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u>&lt;신 설&gt;</u>	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